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08. 2. 4.

운영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발의일자 : 2008년 1월 25일

나. 발 의 자 : 고기판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3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2월 1일)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고 기 판 의원)

#### 가. 제정이유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소지역사회 및 의회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저극 유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안 제3조)
-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안 제4조)
- 표창을 행할 때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안 제8조)
-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내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안 제9조)
-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안 제10조)

-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안 제12조)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증으로 행할 수 없다.(안 제13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지방의회 표창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함.
- 다만, 부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등을 표창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안 번호	121
----------	-----

발의연월일 : 2008. 1. 25 .

발 의 자 : 고기판의원 외 7 명

## 1. 제정이유

-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평소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조례안 제3조)
- 나.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조례안 제4조)
- 다. 표창을 행할 때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조례안 제8조)
- 라.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및 관내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조례안 제9조)
- 마.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조례안 제10조)
- 바.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조례안 제12조)
- 사.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조례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나.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이에 해당하는 때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 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및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상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은 반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창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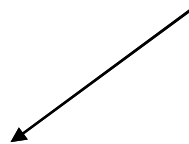


← 금박지인쇄

← 완자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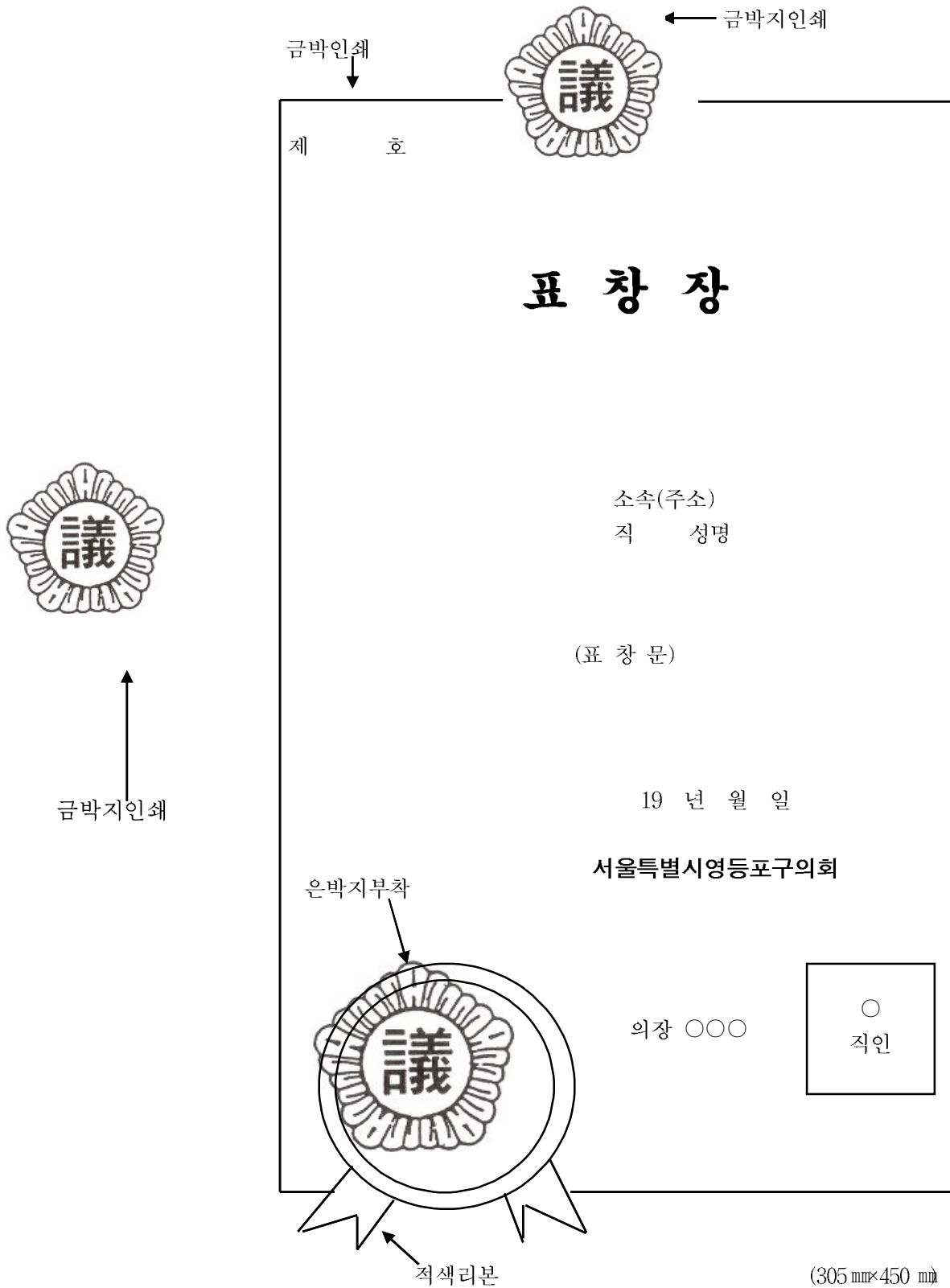
카바바탕: 견직구로스 진곤색

명조체 금박지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속(주소)  
직 성명

(상 장 문)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금박인쇄

← 금박지인쇄

← 금박지인쇄

← 은박지부착

← 적색리본

(305 mm×450 mm)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금박지인쇄

금박지인쇄

# 감사장

소속(주소)  
직 성명

(감사문)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장 ○○○

○  
직인

은박지부착

적색리본

금박지인쇄

(305mm×450mm)

<별지 제5호서식>

###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경우)	
주 소			
소 속		직 위	
직 급		근 무 기 간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훈 격		순 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연 월 일	학 력	연 월 일	학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내 용	연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6서식>

### 공적심사 의결서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령	비고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공적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음.

